

# 環境庁告示・公告

## 연료용 유류의 유황함유 기준설정 및 사용지역

- 환경청 告示 88 - 14 호 -

환경보전법 제 27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“연료용 유류의 유황함유 기준설정 및 사용지역에 관한 고시”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.

1988 년 4 월 1 일

환경 청 장

연료용유류의 유황함유기준 설정 및 사용지역에 관한 고시

제 4 조중제 2 항을 제 4 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2 항,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2) 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발전업을 하는 사업자중 별표 2 의 사업자는 동표의 조건으로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1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(3) 제 1 항제 1 호, 제 2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발전업을 하는 사업자중 별표 3 의 사업자는 동표의 조건으로 저유황유를 사용하여야 한다.

별표 2, 별표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198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[ 별표 2 ]

### 연료 사용 조건

소재지	발전소명	유황함유량	사 용 량
부 산 직할시	부산화력	2.5%이하	전체 유황함유량이 2.5%(B-C유 중량기준)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B-C유와 석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.
여수시	여수화력 호남화력	2.5%이하	전 량

[ 별표 3 ]

### 연료 사용 조건

소재지	발전소명	유황함유량	사 용 량
서 울 특별시 인 천 직할시	서울화력  인천화력	0.3%이하  1.6%이하	전 량  전량 LNG를 사용하되 LNG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만 하여 일부 유황함유량 1.6% 이하의 B-C유를 사용할 수 있다. 1.6%이하의 저유황유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(1) LNG공급중단 사고시 (2) 하절기 등 전력수요 성수기, 발전량 증가시 및 기타 필요시 (3) (2)의 경우 총 사용 에너지량의 15% 한도 내

◎ 환경청 고시 제 88-15 호

88서울올림픽기간중 서울지역 대기배출시설의 연료사용 변경조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8 년 4 월 1 일

환경 청 장

88 서울올림픽기간중 서울지역 대기배출 시설의 연료사용변경조치에 관한 고시

제 1 조 ( 목 적 ) 이 고시는 환경보전법 제 27 조 및 동법 제 27 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88 서울올림픽기간중 서울지역내의 대기배출시설중 유황분 1.0%(wt%) 이하 저유황유를 사용해야 할 대상시설과 사용자 및 공급자의 준수사항등 연료사용 변경조치에 관하여,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 대상시설 ) 1988년 8월 16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내에서 B-C유를 연료용 유류로 사용하는 시설은 “연료용 유류의 유황함유기준 설정 및 사용지역에 관한 고시”중 제 4조제 1항제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황분 1.0%이하의 저유황유를 사용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 사용기간 ) 유황분 1.0%이하의 저유황유를 사용해야 하는 기간은 1988년 8월 16일부터 동년 10월 15일까지로 한다.

제 4 조 ( 사업자의 준수사항 )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제 3 조의 기간중에 유황분 1.0% 이하의 저유황유가 아닌 유류를 사용하지 않도록 미

리 재고량 또는 수급조정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.

2. 제 3 조의 기간중에 사용할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유황분 1.0%이하의 저유황유인지의 여부를 공급자로부터 확인받을 것.
3. 제 3 조의 기간중에 사용한 유류의 수급대장을 별표 I 의 양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고 관계공무원의 자료요구에 응할 것.

제 5 조 ( 공급자의 준수사항 )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내에 B-C유를 공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대상시설에 공급하는 B-C유가 유황분 1.0% 이하의 유류임을 확인하고, 사용자에게 공급시마다 이를 세금계산서등 전표에 명시할 것.
  2. 유황분 1.0%이하의 B-C유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내에 우선 공급하여 사용자의 수급상 차질이 없도록 협조할 것
- 부 칙
1. ( 시행일 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2. ( 유효기간 ) 이 고시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\*

